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4.

고 양 시 장

5등급 자동차 지원은 2026년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mecar.or.kr>), 콜센터(☎1577-7121)를 통해 등급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 예산) 3,256,200,000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0대,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는 10대 이하로 대상선정
 -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
- (접수 기간) '26. 3. 11.(수) ~ '26. 10. 16.(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대상선정)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순서대로 대상선정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①온라인 ②등기우편('26.3.11. 소인분부터 '26.10.16.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2 지원대상

※ ① ~ ⑤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가능
- ※ 차량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3 대상선정

- (선정방식)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 신청 기간 내 여러 대를 신청하여도 1대만 대상선정
- ※ 신청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대상선정 통지가 있어야 지원 가능
 - ※ 대상 선정 전 폐차(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선정안내)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조기폐차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만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재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수정 요청 필요

4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 공동명의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등기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로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로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2. 지원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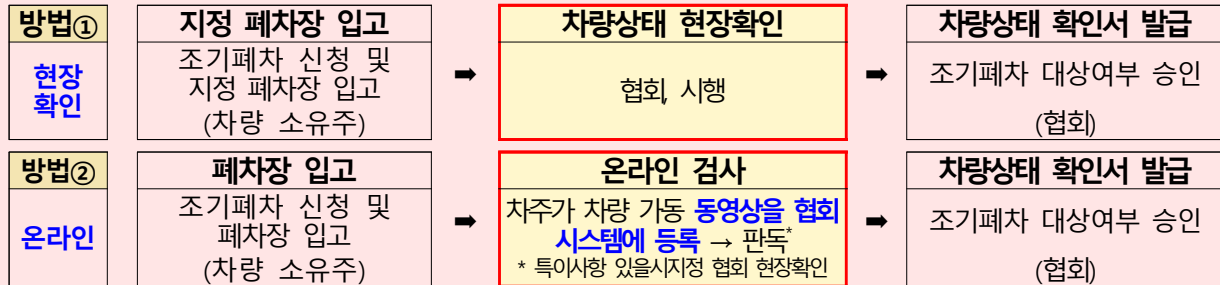
②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에게 발급(전자고지 발송)
-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③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후 통보
- (차량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하여야 함(확인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 [붙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④ 1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등)
- ※ 청구기한 : ②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⑤ 1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⑥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5.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⑦ 2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⑤와 동일

5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750		
		5,500cc 이하	1,10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1,600		
		5,500cc 이하	2,40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5)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ex5) 자동차(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총중량 16톤 미만	100%	200%(신차)
	총중량 16톤 이상 33톤 미만		
	총중량 33톤 이상		
지게차	총중량 9톤 미만		
	총중량 9톤 이상 18톤 미만		
	총중량 18톤 이상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 저소득층 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국번없이1357)
 -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 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6개월 소유 예외 적용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보조사업 지원 금액 및 조건 상세 >

○ 조기폐차 1차(폐차) 보조금 지원

구분	5등급	4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구분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음

<p>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p>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지급 후 2차 보조금 청구 시 해당 차량(중고차인 경우)의 2년 이내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지급 이력 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문의 시 확인 가능

6 기타 유의 사항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2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 운행기간(2년 : 폐차 등 말소불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구분	폐차 등 말소 불가 기간(2년)	중복 지원	폐차 등 말소 불가 기간(2년) 미준수 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X (없음)	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동일차량 2년간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O (준수)		O (회수)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 **민원방지를 위해 고양시 외 운행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을 통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참고4]**
-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 폐차되는 차량과 차량구매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기타 문의 : 지자체 연락처 또는 협회 연락처 1577-7121

7 자주하는 질문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 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 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공동명의 포함)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추가 또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이 다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제한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5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 (답변) ①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 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1차 보조금 청구 기준(2차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 당시 기준으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 (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1차 보조금(2차 보조금 포함)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공동명의>

○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참고 1] 위임장 1부.
7.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1부.
8.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1부.
9. [참고 4]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여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공동명여자는 명여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_____		□ 휴대전화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__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영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p>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p> <p>※ 공동명의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여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여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여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등록원부	없 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중,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여자만 해당)	2.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검사결과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중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input type="checkbox"/> 용도()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부착가능 <input type="checkbox"/>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사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input type="checkbox"/>	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중고차		원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현장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input type="checkbox"/>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확인 항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인 결과	<input type="checkbox"/> 일치 <input type="checkbox"/> 불일치 <input type="checkbox"/>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 가 <input type="checkbox"/>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향	- 정상 작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 가
	제동	- 제동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input type="checkbox"/>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input type="checkbox"/>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input type="checkbox"/>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체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input type="checkbox"/>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input type="checkbox"/> 단순 파손(일부파손)
- 유리창 파손 상태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input type="checkbox"/>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단순 파손(일부 깨짐)			
등화장치 설치 상태					
첨부물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같음 <input type="checkbox"/>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후·좌·우면)				
판정 결과	정상 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종합의 견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참고 1]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같음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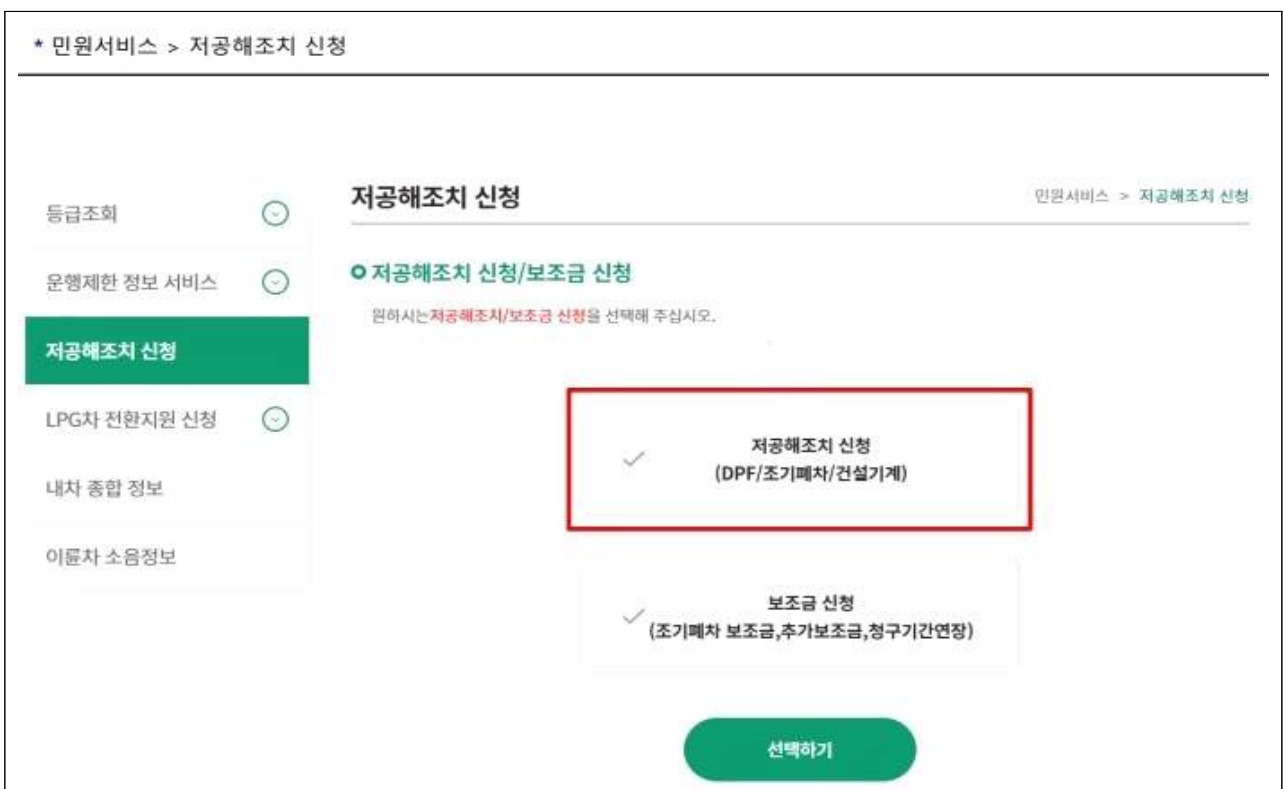
-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 ※장착불가 및 미개발장치 건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 조기배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번호 + 120)
- ※저공해조치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증명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자명	<input type="text"/>
*휴대전화(대표자)	0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자동차 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차량조회"/>
※ 차량조회버튼 클릭후 차량검색 차대번호링크를 선택하시면 신청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차대번호	<input type="text"/>
*저공해조치 방법	<input type="radio"/> 저감장치 부착 <input checked="" type="radio"/> 조기배차
취약계층 <input checked="" type="radio"/> /소상공인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여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여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체크한 경우 조기배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적용 불가 (문의처 : 1577-7121) ※ 첨부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 또는 PDF(*.pdf), 이미지(*.jpg, *.jpeg, *.png)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차명	<input type="text"/>
연식	<input type="text"/>
소유자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신청지자체	<input type="text"/>
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팩스번호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본인은 신청차량의 정보(배출가스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20-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조기배차 접수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취소

저공해신청

순서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보조금·추가보조금·기간연장** 선택 클릭 ⇒ 신청정보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동의 하고 서명완료)**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등급조회
- 운영제한 정보 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내차 종합 정보
- 이륜차 소음정보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보조금 신청

원하시는 저공해조치/보조금 신청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공해조치 신청
(DPF/조기폐차/건설기계)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보조금, 청구기간연장)

선택하기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

○ 저공해조치신청내역

추가신청
뒤로

접수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청 지자체	신청일자	진행상태	보조금	추가 보조금	기간 연장
5412078	999210 003	RHTEST	서울특별시 신청	20250217	권도완료 (예산내용 인)	신청	신청	신청

* 차대번호를 클릭하여 상세신청내역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신청을 클릭하면 새로운 차량을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추가보조금 청구, 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은 상세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은 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확인 [바로가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민원서비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신청정보 등록

⋮ 신청 정보 조회(미카 전산)

차량번호	977가3355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차량 소유주 이름* (발소증상)	홍길동
명의확인*	<input type="radio"/> 개인(단독)명의 <input type="radio"/> 공동 명의 <input type="radio"/> 법인 차량 <input type="radio"/> 위수탁 차량 <input type="radio"/> 비영리단체(교회 등) <input type="radio"/> 사망
연락처	010-0000-0001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모두 해당으로 체크>) <input checked="" type="radio"/> 미해당
조기폐차 지원금 총계	폐차 지원가액 2,830,000원 + 저감장치 이계발 추가 보조금 0원 +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0원 = 총 2,830,000원

⋮ 보조금 입금 계좌 등록

본인 계좌번호 (필수)*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만 가능(영축지입어, 압류방지통장 등 불가) 하며, 해당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선택"/> <input type="text" value="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input type="button" value="계좌인증"/>
발소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민원서비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등록 (개인)

말소증(필수)	파일첨부 말소증.png	파일 추가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필수)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통장 사본(필수)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기타 서류(선택) (개명으로 말소증상 소유자 명과 통장사본 명의가 동일 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등)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이전 단계

다음 단계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민원서비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등록 (법인 차량)

말소증(필수)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필수)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법인인감증명서(필수)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통장 사본(필수)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기타 서류(선택)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추가

이전 단계

다음 단계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p>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p> <p>① 등급조회 클릭</p>	
2	<p>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p> <p>②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p>	
3	<p>③ 차량번호 입력</p>	

<p>4</p>	<p>④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⑤휴대폰 인증</p>	
<p>5</p>	<p>⑥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p>	

참고4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1577-7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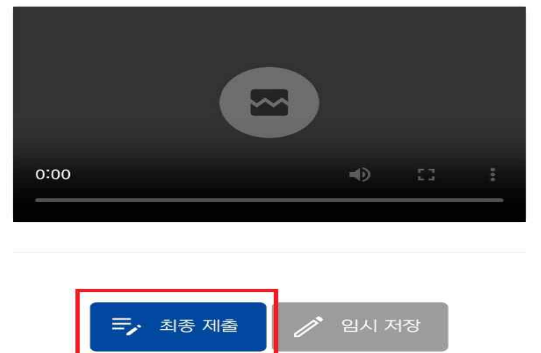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시스템 로그인 <small>차 주</small></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자료 (동영상) 업로드 <small>차 주</small></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small>협 회</small></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사 수수료 입금 <small>차 주</small></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합격 여부 판정 <small>협 회</small></div> </div>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p>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p>※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p>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2 단계 (차주)</p> <p>온라인 로그인</p>		<p>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p>						
<p>3 단계 (차주)</p> <p>정보 확인</p>		<p>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p> <p>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p> <p>● 차량 정보</p> <table border="1" data-bbox="895 1211 1414 1447"> <tr><td>차대번호</td><td>KPACA4AB1BP000000</td></tr> <tr><td>차명</td><td>액티언스포츠</td></tr> <tr><td>차량 번호</td><td>AA가1234</td></tr> </table>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p>4 단계 (차주)</p> <p>동영상 업로드</p>	<p>● 차량 동영상</p> <p>파일을 선택해주세요. 업로드</p> <p>● 가능한 확장자명 : mp4, mkv, avi, mov, flv</p> 	<p>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p> <p>※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www.escar.or.kr 내용:</p> <p>AA가1234차량 동영상이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관리자 검토 후 안내 예정입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p> <p>▶결과는 수수료 납부완료 차량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나이스페이먼츠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p> </div> <p>※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p> <p>※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p>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5 단계 (협회)</p> <p style="text-align: center;">합격 여부 판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p> <p>[Web발신] AA가1234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기배차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입니다.</p> <p>*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바랍니다.</p> <p>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WhiX2412197149</p> <p>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4,000원 가맹점 대표전화: 031-689-3073</p> <p>** 상기 메시지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요청에 따라 나이스페이엔츠(주)에서 대행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수신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신 경우 삭제 부탁 드리며, 오발송으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p>	<p>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p> <p>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p> <p>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 불합격 시></p> 														
<p style="text-align: center;">6 단계 (차주)</p>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결제</p>	<p style="text-align: center;">NICE PAY</p> <p style="text-align: center;">SMS 링크결제 서비스</p> <p>주문 정보를 확인 후, 구매 요청하신 내역과 일치하실 경우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이용해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내역과 상이할 경우, 가맹점 대표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가맹점 대표전화 : 031-689-307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상품금액</td> <td style="text-align: right;">14,000원</td> </tr> <tr> <td>주문번호</td> <td>KNAJE55536K000000</td> </tr> <tr> <td>상품명</td> <td>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td> </tr> <tr> <td>판매자명</td> <td>(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td> </tr> <tr> <td>구매자명</td> <td>AA가1234</td> </tr> <tr> <td>결제수단</td> <td>가상계좌</td> </tr> <tr> <td>최종 결제 금액</td> <td style="text-align: right;">14,000 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결제하기</p>	상품금액	14,000원	주문번호	KNAJE55536K000000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판매자명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매자명	AA가1234	결제수단	가상계좌	최종 결제 금액	14,000 원	<p>① 안내 문자 메시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p> <p>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p> 
상품금액	14,000원															
주문번호	KNAJE55536K000000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판매자명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매자명	AA가1234															
결제수단	가상계좌															
최종 결제 금액	14,000 원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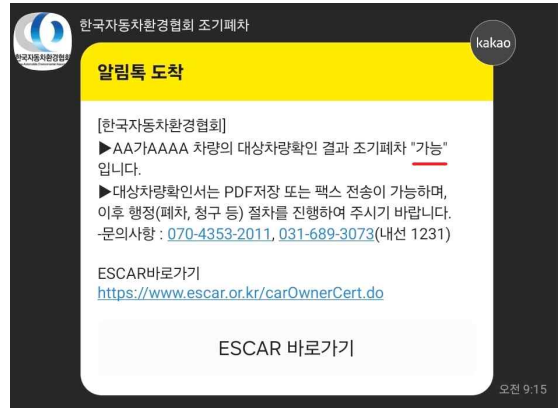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PDF 저장
팩스 발송

확인번호 070-4353-307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원상
소유자	성명	한국자동차경협회	생년월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817	
	후대전화(사무 본인)	FAX	031-426-5474
신청 자동차 및 폐차 또는 문자기	차량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EDNATB55556E00000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전설기계	□연식(2011년) □제기량 1995 LCC	□차량명(전설기계명): □정원(승차): □동행 □국가유공자(0.4) □중요유물(0.7) □본
확인 항목 부분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input type="checkbox"/> 일치 <input type="checkbox"/> 불일치 <input type="checkbox"/> 차량용기
	진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동 <input type="checkbox"/> 불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충격 전달 여부(권 후진)	<input type="checkbox"/> 가동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전달 <input type="checkbox"/> 후진 불가
	조향	- 정상 작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동 <input type="checkbox"/> 불가
	제동	- 제동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동 <input type="checkbox"/> 불량
	유압장치 (인발장치)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input type="checkbox"/> 유압 <input type="checkbox"/> 유압 <input type="checkbox"/> 유압 불량 <input type="checkbox"/> 유압부족 <input type="checkbox"/> 작동 <input type="checkbox"/> 불량
	그의 주요 부품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불량
		- 차체 외관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불량
		- 관송장치 상태(차량)	<input type="checkbox"/> 작동 <input type="checkbox"/> 불량
	일부 품	- 유리창 파손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불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불량	
합계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등록상으로 검증 <input type="checkbox"/> 현상 확인 : 사진 4매(전·후·좌·우면)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불량	
판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중합의견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그문 기밀 가차에 국한 검사 수수료 확인 시 기밀 불가, 현
 장 확인 검사 시에는 14,000원 동일 기밀, 비유도인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그문 장부(별첨)로 제출 가능
 ※현 장 수수료 동일차량용 함께 제출하여 기밀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경협회
 입산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하오니
 2025년 01월 30일
 한국자동차경협회장 확인자 : 임리나



-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